

# 결정서

사건 : 2014-590 연구비 등 회수처분 취소(감경) 청구

청구인 : 성명 [REDACTED]

소속 [REDACTED] 대학교 직위 부교수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 오범석

피청구인 : [REDACTED] 대학교 총장  
[REDACTED]

심사일 : 2015. 2. 11.

결정일 : 2015. 2. 11.

피청구인이 2014. 12. 4. 청구인에게 한 총 44,776,360원의 회수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4. 12. 15. 이의 취소(감경)를 구하는 소청심사 청구를 하여 우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처분사유

가. 학술연구비 등 지원금 미환수

1) 청구인은 2012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은 '전통 침선소품의 조형적 형태미를 기반으로 한 텍스타일 디자인 및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콘텐



츠 개발(이하 논문1)’ 연구과제 지원금 8,050천원과 교내 연구비 2,868천원으로 수행한 ‘21세기 패션아트에 나타난 업사이클링에 관한 연구(이하 논문2)’가 부정행위에 의한 연구로 판명되었으나 이들 연구지원비 합계 10,918천원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청구인은 2009. 1. 21.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된 ‘매화꽃을 모티브로 한 패션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논문을 2009년 복식문화학회에 게재하면서 논문게재 장려금 750천원을 지원받는 등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연구물 13건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논문게재 장려금 합계 10,004,400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음.

3) 또한 2009. 10. 15.부터 2009. 10. 17.까지 서울에서 개최한 추계국제복식학회에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카프의 표현유형과 특성’ 논문을 발표하면서 2009. 10. 30. 논문발표 지원금 200천원을 지원받고, ‘지역문화 축제를 기반으로 한 패션문화 상품 개발’ 연구비에서 2009. 10. 22. 출장비 162천원을 이중으로 지급 받는 등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논문발표지원금, 전시(발표)지원금, 타 연구비(출장비) 등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662,400원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나. 교원 성과급연구보조비 부당수령

청구인은 표절된 논문으로 판정받은 2008년 ‘알렉산더 맥퀸 작품의 그로테스크적 특성(이하 논문3)’과 작품 ‘Harmony(Invited Fashion Exhibition-Art & Asian Beauty)’를 2009년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하여 평가 등급 “A”를 받아 교원성과급연구보조비 4,089,330원을 지급 받는 등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표절된 논문 총 16편, 작품 10점을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하여 교원 성과급연구보조비 합계 22,191,52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2. 청구인 주장

#### 가. 학술연구비 등 지원금 환수조치



1) 청구인이 발표한 논문 중 2012. 8. 1. 전의 논문에 대하여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적용하여 환수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2013년에 발표한 3개의 논문만 환수조치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2) 환수조치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위 3개의 논문은 모두 피청구인으로부터 논문제재 장려금을 받은 것이므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적용도 없었고, 다만 순천대학교 규정에 의하여 환수여부가 결정될 것인데 위와 같이 청구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논문에 대한 환수조치는 위법하다.

3) 청구인에 대하여 문제가 된 논문들의 경우 모두 서론 또는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인용 또는 재인용 표시를 누락한 것이 전부이고, 해당 논문은 청구인의 업적으로 남아 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서도 청구인 논문의 독창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연구 또는 논문작성 과정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

4) 2012년도 「[REDACTED] 대학교 학술연구활동지원 사업계획」의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및 전시(발표)회 소요경비를 타 기관에서(연구비 포함)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라는 신설된 규정을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이루어진 청구인의 논문에 대해 적용시켜 이중지원금 수령으로 환수조치를 결정한 교육부 감사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교원성과급연구보조비 부당수령

1) 「[REDACTED] 대학교 성과급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제2조 및 동 지침 제8항에 명시된 성과급 산정 방식을 도외시 하고 일률적으로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와 허위업적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잉규제이다.

2) 연구윤리위반의 행위의 그 경중에 따라 성과급 반환의 정도를 달리 해야 할 것이며, 해당 성과급의 기준을 충족함에도 성과급보조금을 반환시키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 3. 판단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4. 2. 23. █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임용 되었고, 2010.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2) █ 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2013. 6. 13. 청구인이 연구윤리위반을 하였다는 취지의 제보가 접수되었고, 동 위원회 위원장은 2014. 4.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권고하였다.

#### 3) 징계

가) 피청구인은 2014. 7. 1. 청구인에게 정직2월 처분을 하였다.

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2014. 9. 25. 감봉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 4) 교육부 감사

가) 교육부는 2014. 6.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사안 조사 실시 통보하고, 2014. 6. 30. ~ 2014. 7. 2. 감사를 실시하였다.

나) 교육부는 2014. 9. 3. 피청구인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학술연구비 지원금 지급 부적정, 교원 성과급연구보조비 부당수령으로 인한 각 경고처분 및 총 44,776,360원 회수)

다) 청구인은 2014. 10. 1. 교육부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교육부는 2014. 11. 28. 청구인의 감사처분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2. 4. 청구인에게 경고 처분 및 총 44,776,360 원<sup>1)</sup>의 회수 처분 통지를 하였다.

#### 나. 처분사유 인정 여부

##### 1) 학술연구비 등 지원금 미환수

가) 청구인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연구비 8,050천원으로 작성된

1) 교외 연구비(한국연구재단 지원) 8,050천원, 교내 연구비 2,868천원, 논문제재 장려금 10,004,400원, 이중으로 지급 한 학술연구활동지원금 1,662,400원, 교원 성과급연구보조비 22,191,520원



청구인의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된 이상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연구비를 받은 시기가 2011. 8.이므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개정 이전에 수행된 논문이어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환수조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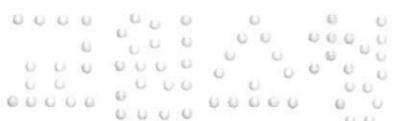
인문사회분야의 학술연구비 관리의 근거가 되는 「학술진흥법」(2012.1.22. 시행 법률 제 10877호) 제19조(사업비의 중지 등)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6조(2009.1.1.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 111호) 및 동 규정 제38조(2013.11.4. 교육부훈령 제26호)는 “허위, 이중지급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받은 연구비에 대한 환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연구과제 지원금 8,050천원의 환수는 적법한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교내연구비 2,868천원 및 논문제재 장려금 10,004,400원에 대해 청구인은 감사처분서에 의한 교내 연구비의 환수조치에 대한 근거규정인 「[REDACTED] 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제14조 제6호에 규정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연구비의 수령 과정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경우’라고 한정 해석하여 연구부정행위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상위 규정인 「학술진흥법」과 다르게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 연구비 회수 또한 적법한 근거에 의해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논문표절의 정도가 미약하여 징계를 경징계로 감경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환수금액은 대폭 감경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심사 시 문제가 되었던 논문은 총 5편<sup>2)</sup>에 불과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논문들 모두 표절 행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청구인이 받은 학술연구활동지원금 1,662,440원에 대해 교육부

2) 논문1. 감사처분서 【붙임1】의 논문 중 연번 3, 10, 11, 12번



감사처분서에서 명시된 「【붙임2】 학술연구활동 지원금 이중 지원 현황」에서 동일한 학회나 대회에 참가하면서 █ 대학교로부터 논문발표지원금과 출장비를 이중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위 학술연구활동지원금은 여비의 성격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외에 청구인이 출장비를 따로 받아야 하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교원성과급연구보조비 부당수령

가) 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논문은 그 독창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허위업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감사처분서의 【붙임】 '2009~2013년 교원업적평가에 반영된 표절 논문/작품 내역'에 나온 16편의 논문 모두 █ 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로 판단되거나 표절의혹이 있고, 인용 및 재인용 표시를 누락하거나 타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었고, 10편의 작품 또한 모두 창작성이 없는 동일 작품의 변형이나, 창작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나) 당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이 되었던 논문은 감사처분서의 【붙임】의 16편의 논문 중 3편<sup>3)</sup>뿐이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논문들 모두 표절 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와 허위업적 자료를 제출한 자'에 해당되는바, 「█ 대학교 성과급연구보조비 지급 규정」 제2조 및 동 지침에 따라 해당년도 성과급 전액(22,191,520원)을 반납하게 한 피청구인의 환수조치는 적법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성과급 반환의 정도를 연구윤리위반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연구윤리위반 행위는 대학교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인 학문연구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사회적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경중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

3) 감사처분서 【붙임】 논문 중 2013년도 ①, ③, ⑦



#### 4. 결 론

이상과 같이 █ 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논문 및 작품이 모두 연구윤리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교육부의 감사 처분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연구비 환수 등의 피청구인의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2. 11.

## 교 원 소 청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성삼제(불참)

상임위원 류정섭

위 원 고영현

위 원 양일선

위 원 김동춘

위 원 김경배

위 원 문영기 (불참)

위 원 박범덕



위 정본임.

2015. 2.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